

〈번역〉

明末清初 啓蒙思想家的 法律 思想*

장국화**

明末清初는 중국 봉건사회후기에 있어서 하나의 “天崩地裂”과 같은 대혼란시기였다. 명대 중·후기 즉 嘉靖년간으로부터 萬曆년간(16세기중엽)까지 농업생산력의 증대와 상품경제의 발전, 민간수공업·광업·상업 등이 비교적 발전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상업도시가 40여개가 출현하였고, 대외무역도 발전하였으며, 浙江省과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 자본주의 성질을 띤 雇傭關係도 발생하였다. 중국 사회에 있어서, 이 시기에 자본주의맹아가 이미 잉태되기 시작했고, 봉건적인 생산관계가 점진적인 해체과정에 접어들기 시작하였다. 또한, 상품화폐경제와 봉건자연경제와의 모순, 도시와 농촌간의 모순, 농업과 수공업의 모순이 점차 露呈되기 시작하였다.

당시에 있어서, 개인상업과 수공업을 제외하고는, 일부 중소지주도 상공업을 경영하였다. 그들은 剩餘 地租를 모두 팔아, 자본을 축적하고, 그것으로 “상공업에 투자하여 재산을 늘렸다.” 이전의 重農輕商의 풍조와는 달리, “末業”으로 여기던 상공업에도 큰 관심을 보였던 것이다. 이러한 지주는 도시상공업과도 연계하여, 일종의 공동 언어를 사용하였는데, 혹자는 이들을 시민정신에 물들었다고 한다. 지주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일부 봉건사대부는 동시에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도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과는 달리, 皇權을 핵심으로 하는 봉건통치는 날로 부패하여 갔다. 황제는 土地兼併에 앞장서서, 끊임없이 皇莊을

* 張國華, 『中國法律思想史新編』(北京大學出版社, 1991)에서.

** 前 北京大學 법학계 교수

확충하고, 관료지주도 토지점병에 가세하였으므로, 대량의 농민들은 토지를 상실하여 佃農으로 전락하였다. 江南에 있어서, “有田者(지주)가 10분의 1, 소작인이 10분의 9”라는 국면이 많은 지역에서 출현하였다. 상품경제의 자극 하에서, 봉건통치자는 농민에게 부단히 각종 착취를 가중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정치적으로도 더욱 더 혼란한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와 같은 皇權의 악성적 팽창으로 환관의 전횡이라는 악성 증상이 발생하였다. 이는 명태조 주원장이 “환관은 政事에 간여할 수 없다. 간여하는 자는 참수형에 처한다”라고 한 말에 대한 하나의 조롱이라고 할 수 있다. 황권이 집중됨에 따라, 환관의 세력도 점차 비대해져 갔다. 환관은 황제 측근에 있는 시종이므로, 항상 황제와 같이 지내는 走狗일 뿐만 아니라, 황제의 총애도 쉽게 얻을 수 있었다. 明代의 제도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환관은 五權을 장악하였다. 첫째는, “批紅¹⁾”으로 즉 司禮監의 太監이 황제의 구두명령을 기록하는 것을 담당하는 임무를 가르키며, 그리하여 기회를 타서 제멋대로 세도를 부릴 수 있었다. 둘째는, “監軍”으로 즉 太監이 수도병영과 각 鎮의 군을 감시하는 것을 담당하여 상당히 큰 軍權을 장악하였다. 셋째는, 사법재판에 간여하는 것으로, 태감의 三法司(刑部, 都察院, 大理寺)에 참가하여, 중대한 사건을 審理하는 권한이 있고, 그 지위는 尙書의 위에 있었다. 넷째는, 각지를 鎮守하는 太監이 민사를 겸임하여 그 지역의 행정에 간여하였다. 이상의 四權 외에도 특수한 하나의 권한이 있었는데, 바로 廠衛(東廠·西廠과 錦衣衛)를 관리하는 것으로, 特務活動을 행하였다. 명말 악명이 높았던 환관 劉瑾·魏忠賢 등은 바로 이 五權이 만들어낸 부산물이다. 명말에 있어서, 정치적인 부패는 결코 환관의 전횡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다. 外廷의 관료집단은 內閣首輔(宰相)의 권세를 차지하기 위해, 서로 잔인하게 죽이고, 首輔의 지위에 이르러서는 賄賂의 행위가 자행되었다. 예를 들면, 嘉靖 27년(1548년) 首輔의 지위에 오른 嚴嵩은 “문·무관을 발탁함에 있어서 능력은 불문하고, 뇌물의 양에 따라 관직을 주었다.” 그 후, 그의 家産을 몰수할 때, 재임기간 동안에 모은 가산이 황금 30만냥, 白銀 200만냥에 이르렀고, 그의 고향인 江西省 袁州(지금의 강서성 宜春)의 10분의 7의 토지를 점병한 외에, 여타 지방에도 광대한 良田과 수십

1) 기록서에 朱筆을 사용하므로 “批紅”이라 일컫는다.

채의 별장이 있었다. 그러나 황제와 비교할 때 그것은 극히 미미한 것이었다. 明神宗 朱翊鈞은 銀 2천 4백만냥으로 보물을 구입하라는 한 차례의 命을 내렸다. 또 8백여만량의 비용으로 文廟(定陵)를 축조하였는데, 이는 전국 畝賦稅 수입의 2년치와 맞먹는 것으로, 당시 일천만 貧農의 일년 양식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명말의 부패한 통치는 실질적으로 많은 농민들로 하여금 생활할 수 없게 하였으며, 계급간의 모순을 격화시켜, 농민기회가 잇달아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신홍시민 계층의 反鑛監·反稅監 투쟁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수공업 노동자와 상공업자가 일으킨 이른바 “民變 또 8백여만량의 비용으로 文廟(定陵)를 축조하였는데, 이는 전국 田賦수입의 2년”은 당시 발전 과정중인 상품경제와 자본주의 맹아요소가 봉건통치자의 압제와 박해를 타파하고자 하는 바람을 명확히 반영하는 것이었다. 이와 동시에, 봉건사대부 내부 있어서는, 일부 중소지주계층과 상공업자출신이 연계하여, 봉건국가와 그들의 이익을 유지하려는 차원에서, 환관의 전횡에 불만을 품고, “東林黨”을 결성하여, 환관 전횡의 폐단을 규탄하며, 환관을 주체로 하는 “閹黨”을 반대하였다. 그들 중의 상당수는 당시에 발생한 시민투쟁(즉 民變)에 동정하거나 참가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명말정치의 부패를 틈타서, 東北의 만주족통치자는 신속하게 東北지방을 통일하고, 나아가 전국을 통일하기 위해 入關을 준비하고 있었다.

명말청초의 계몽사상가는 바로 상술한 新舊 社會의 모순, 계급모순, 민족모순과 통치집단내부의 모순이 첨예하였던 배경 아래에서 비로소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 것이었다.

I . 早期啓蒙思想家的 主要人物과 共通의 特徵

1. 明末清初의 早期啓蒙思想家

명말청초의 계몽사상가는 중국 역사상 최초의 계몽사상가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의 계몽사상가들 중에는 법률사상과의 관계가 비교적 밀접하였는데, 그 주요 인

물로는 黃宗羲·王夫之·顧炎武와 唐甄을 들 수 있고, 그 중 黃宗羲가 가장 뚜렷한 법률사상을 지닌 계몽사상가였다.

黃宗羲(1610~1695)의 字는 太沖이며, 號는 南雷이고, 흔히 梨州先生이라 칭하며, 浙江省 余姚人이다. 그의 부친 黃尊素는 “東林黨”의 주요 인물이며, 후에 환관에게 살해되었다. 黃宗羲는 思想家이자 史學家이며 수학·천문·지리 등에도 많은 연구를 하였다. 그의 저작은 매우 많은데, 그 중 주요한 것으로는 『南雷文定』·『明儒學案』·『宋元學案』·『明夷待訪錄』 등이 있다. 정치·법률 사상방면에 있어서, 『明夷待訪錄』은 그의 대표작일 뿐만 아니라 당시의 모든 계몽사상가들의 가장 대표적인 저작이다. 『明夷待訪錄』은 한편으로는 사상적으로 明이 멸망한 교훈을 총결하여, 봉건군주제도를 신랄하게 비판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경제·법률 등의 제도적인 개혁의 주장과, 아울러 민주적인 색채를 지닌 방안을 제기하였다. 따라서, 구시대를 비판하면서도 신시대의 광채를 동시에 지니고 있었다. 학술계에서는 『명이대방록』을 17·18세기 서구 계몽사상가의 저작과 비교한 적이 있다. 『明夷待訪錄』은 1662년에 쓰여진 것인데(一說에는 1663년), 몽테스큐의 『法の精神』(1748년)과 루소의 『民約論』(『社會契約論』1762년)에 비해 수십 년 혹은 백년정도 앞서 쓰여진 것이고, 1789년 프랑스의 『人權宣言』에 비하면 더욱 이른 것이며, 로크의 『政府論』(1690년)에 비해서도 20~30년 이른 것이었다.

王夫之(1619~1690)의 字는 而農이고, 號는 姜齋이다. 흔히 船山先生이라 칭하며, 湖南省 衡陽人이다. 그도 思想家이나, 유물주의 철학면에서는 黃宗羲에 비해 뛰어나다. 저서로는 『周易外傳』·『張子正蒙注』·『尚書引義』·『噩夢』·『黃書』·『讀通鑒記』 등이 있으며, 법률사상방면의 전문적인 저작은 없다. 顧炎武(1613~1682)의 字는 寧人이고, 號는 亭林이며, 江蘇省 崑山人이다. 黃宗羲, 王夫之와 함께 唯物主義 思想家이다. 그는 “經世致用”을 제창하였고, 학술연구를 실질적인 사회 문제의 해결에 연계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저서로는 『天下郡國利病書』·『日知錄』·『音學五書』·『亭林詩文集』 등이 있다. 黃宗羲·王夫之·顧炎武는 명말청초의 계몽사상가 중의 3대 대가이다. 그들은 모두 당시의 애국주의자로서, 淸朝가 入關한 後에는 잇달아 反淸鬪爭에 참가하였다. 唐甄(1630~1704)의 初名은 大陶이며, 字는 鑄萬이다. 號는 圃亭이며, 四川省 達州(지금의 達縣)人

이다. 계몽사상가 중에서, 그도 봉건전제주의에 반대한 것으로 유명하다. 저서로는 『潛書』가 있다.

명말청초의 계몽사상가로는 상술한 黃宗羲·王夫之·顧炎武·唐甄 이외에도 何心隱·李贄·戴震·汪中·章學誠 등과 陳確·潘平格·朱之瑜·傅山·李顥·顏元·李燾 등을 들 수 있다.

2. 早期 啓蒙思想家的 共通的 特徵

계몽사상가들은 모두 일련의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명말청초의 특정한 역사적인 조건 하에서 출현한 계몽사상가로서 서구 계몽사상가와와는 서로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개괄하면 아래와 같다.

- ① 그들은 封建制度, 특히 봉건군주전제제도와 봉건토지소유제 및 그 정치·경제·사회와 법률방면에서 발생된 것들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였다.
- ② 그들은 모두 民主·自由·自治의 경향을 지니고 있으며, 새로운 것에 대해 비교적 민감하고, 낡은 틀에 얽매어 답보상태에 있는 것을 반대하였다.
- ③ 그들은 모두 비교적 農民과 市民을 포함하는 민중을 동정하였다. 마르크스는 共產黨 宣言에서 “중세의 시민계급과 소농계급은 현대 부르조아계급의 선구이다”라고 하였는데, 중국 早期啓蒙思想家是 이러한 시민계급과 소농계급에 대해 경의를 품고 있었으나, 농민폭동을 동정하지는 않았다.
- ④ 그들은 미래에 대하여 무한한 신념과 환상을 품고, 그들의 理想을 유토피아 세계와 연계시켰는데, 이러한 “世界樂園”을 진정으로 믿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현실을 뛰어 넘고 미래를 초월하는 공상을 하면서도, 봉건적인 사상에 얽매이던 한계성을 지니고 있었으며, 각종 옛 전통에도 엄중하게 속박되어 있었다. 그들의 改革方案과 理想은 종종 “托古改制” 혹은 “復古改制”의 형식으로 나타났는데, 심지어 사용한 언어도 모두 고루한 것이며, 형식과 내용의 모순이 충만하였다.

이러한 특징은 명말청초 계몽사상가의 법률사상 가운데에서 거의 체현되어 있었던 것이다.

II. 黃宗羲를 대표로 하는 啓蒙思想

1. 君主專制를 반대하고, 君權制限을 주장하였다.

黃宗羲는 자신의 역사 연구와 明末의 체험에 근거하여, 정치의 부패와 인민이 고통받는 최대의 禍根은 바로 군주전제 제도라고 인식하였다. 그래서 그는 “천하의 大害가 되는 것은 군주일 따름이다(爲天下之大害者, 君而已矣)”라고 하였다. 그의 말은 비록 간단하나 의미는 심원하였다. 이러한 지적은 君主개인의 好惡의 문제가 아니고 制度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黃宗羲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각자 이기적인 면이 있어서, 각자 자신의 이익(自利)을 앞세우는 경우는 있었으나, 결코 君主가 있어야 할 필요성은 없었다. 그러나 이후에 와서 천하에 公利는 있었지만 公利를 일으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公害는 있었지만 公害를 제거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다. 公利를 일으키고, 公害를 제거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만 채우지 않고, 천하에 이로움을 주며, 자기 자신의害人 害로 여기지 아니하고, 천하의 害를 제거하는 군주가 비로소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였다. 그는 唐·虞·三代(夏·商·周)의 군주가 바로 이리하다고 인식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당연히 진정한 역사가 아니라, 역사에 대한 미화이며, 그것은 托古改制的 구실로 이용되었던 것이다.

黃宗羲는 三代以前の 군주를 긍정하였는데, 이는 바로 三代以後의 군주를 부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양자의 차이를 보면, 三代以後의 군주는 “公利를 일으키거나, 公害를 제거하려 하지 않고, 반대로 公利와 公害의 권한이 모두 군주 자신에게 나오며, 천하의 이익을 전부 군주 자신에게 돌리고, 천하의 害를 전부 남에게로 돌리려는 군주가 존재하고, 천하를 더없이 큰 產業이라 보고, 왕위의 지위를 자손에게 전하여, 무궁토록 누리게 하였다”는 점이다. 이처럼 黃宗羲가 부정한 것은 바로 秦漢以來의 專制君主였다. 王夫之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관점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비록 秦始皇帝를 긍정한 적이 있었으나, “天下是一姓(즉 君主)의 私有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였고, “천하는 한 개인의 것이 아니다(不以天下私一人)”라고 주장하였다. 顧炎武도 이러한데, 그는 “獨治”를 반대하였다. 唐甄은 “秦 이

래로, 무릇 帝王은 모두 賊이다”라고 하면서, 보다 직설적으로 표현하였다.

이처럼 三代以前の 군주와 三代以後의 군주와의 큰 차이를 둔 것은 무엇때문일까? 黃宗羲의 견해에 따르면, 핵심적인 차이는 바로 三代以前の 군주는 “천하가 主이고, 군주는 客이었다.” 三代以後는 “君主가 主이고, 天下가 客이었다”라는 점이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군주가 되고 나서 천하를 안정시키지 못했다. 군주가 되기 이전에는, “天下의 肝腦를 屠毒하고, 天下의 子女를 離散시키며, 군주 자신의 產業을 풍부하게 하는데” 전념하였으며, 군주가 된 후에는 “天下의 骨髓를 敲剝하고, 天下의 子女를 離散시키며, 군주 자신의 淫樂을 누리는 데” 전념하였다. 또한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고 나아가 “이는 나의 產業의 花息이다”라고 했다.

黃宗羲는 三代以前과 三代以後의 백성이 군주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 비교하기를 “옛날의 백성들은 군주를 받들기를 부모와 하늘처럼 여겼는데, 이는 진실로 지나치지 않다. 지금의 백성들은 군주를 원망하기를 원수처럼 여기며, 獨夫라 하니, 본래 그러한 바이다”라고 하였다. 그는 맹자의 民貴君輕說과 暴君放伐論을 긍정하였다. “천하를 主로 삼고, 군주를 客으로 삼는다”는 각도에서 출발하여, 군신관계에 있어서, 황중희도 맹자의 영향을 받아 군신평등의 의미를 포함하는 새로운 명제를 제시하였는데, 즉 “신하와 군주는 이름이 다르나 실질적으로는 같다.” 즉 “이름이 다르다”라는 것은 군신의 지위가 다름을 가르키고, “실질적으로는 같다”는 것은 군신 모두가 萬民을 위해 천하를 다스리나, 단지 직무가 다름을 가르킨다. 그리고 그는 “天下는 매우 넓기 때문에 한 사람이 능히 다스릴 수 없어서, 여러 사람이 함께 나누어 다스린다. 고로 내가 벼슬하는 것은 天下를 위한 것이지 君主를 위한 것이 아니다. 또한 萬民을 위한 것이지 一姓(즉 군주)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그는 과거의 신하는 오직 그 군주가 하는 대로 따라하는 일종의 宦官·宮妾 思想을 지니고, “천하 인민을 군주의 私物로 여겼으며” 자신을 군주의 “僕妾”으로 여겼다. 군주도 신하를 “자신을 위해 분주히 복역하는 사람”으로 여겼다고 보았다. 황중희에 의하면, 신하는 반드시 “만민의 苦樂”을 염두에 두어야지, “一姓의 흥망”만을 염두에 두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군신관계는 主僕의 관계도 아니며, 父子의 관계도 아니다. 군신이 모두 “천하를 일로 삼는다면,” 신하는 “군주의 僕妾이 아니고, 군주의 師友이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黃의 견해들은 명백히 “君爲臣綱”의

봉건정통사상에 대한 충격이며, 군신관계의 측면에서 군주전제제도를 반대한 것이다. 심지어 그는 군주가 혼자 천하를 다스릴 수 없게 된 바에는, 반드시 “관료를 두어 다스리게 하니, 신하는 임금의分身이다”라고 여겼다. 王夫之, 顧炎武 등은 그의 “君臣同治”思想에 대해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顧炎武는 獨治(즉 군주전제정치)를 반대하고, 衆治(즉 君臣同治)를 주장하였다.

黃宗羲의 “천하가 주인이고, 군주는 객이다(天下爲主, 君爲客)”라는 것과 “신하는 군주와 더불어 이름만 다르지 실질적으로 같은 것이다(臣之與君, 名異而實同)”라는 것은 君民·君臣 두 측면에서 비교적 전면적으로 군주전제제도를 비판하였을 뿐 아니라 군주전제제도의 반대와 군주의 “천하를 더없이 큰 산업이라 본다”는 봉건소유권관념의 반대와 연계시켰다. 이것은 그의 反專制思想의 내용을 대단히 풍부하게 하였으며, 중요한 정치적 의의와 사회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황종희와 명말청초의 계몽사상가들이 舊制度에 대해 제기한 새로운 방안은 형식 면에서 결코 참신한 면은 없었다. 즉 여전히 군주제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단지 君權에 대해 제한을 가할 것을 요구한 것뿐이었다. 黃宗羲가 주장한 군권제한은 아래와 같이 3가지를 들 수 있다.

(1) “宰相을 설치하여” 재상의 권리를 제고하였다.

그는 명나라 정치가 구시대와 변함이 없는 원인은 朱元璋이 승상제도를 폐지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보았다. 고대에 있어서, 君臣간의 지위의 차이는 크지 않았는데, “伊尹·주공의 섭정과 같은 것은 재상이 천자를 대신하여 섭정하였던 것인데” 결코 어떠한 비난도 없었다. 그러나 “후세에 이르러 군주는 오만하여 갖고 신하는 그에 아첨하는 존재가 되었다.” “천자의 지위는 지나치게 높아 졌다.” 천자의 死後에, 나이 어린 적장자가 보위에 오르면 “그의 어머니가 위임할 수 있었지”, 재상도 섭정할 수 없었다. 秦漢 이후, 재상 제도를 폐지한 후에는 천자와 더불어 천하를 公治하던 백관들은 황제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도구가 되었다. 천자의 그들에 대한 태도도 “나를 섬길 수 있는 자는 등용하고, 나를 섬길 수 없는 자는 내쫓는다”는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재상이 폐지되기 전에는, “천자는 그 지위를 자손에게 전할 수 있었으나, 재상은 재상의 자리를 자손에게 전할 수 없었다. 천자의 자손

이 모두 현명한 것은 아니므로, 더욱이 재상을 의지하여 현명함을 전하고, 재상은 충분히 보완하여 천자가 또한 현명함을 전하는 뜻을 잃지 않게 하였다. 재상이 폐지되자, 천자의 자손이 현명하지 아니하면, 현명하게 할 자가 없으니, 자손에게 천자의 지위를 전하는 의미가 이 또한 잃었다고 할 수 있도다”라고 하였다. 어떤 사람이 明代의 內閣은 “비록 재상이라는 이름은 없으나, 이 또한 재상의 실질적인 권리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그에게 말하였으나, 이에 대해 그는 “내각의 업무는 전적으로 군주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지 결코 실권이 없으며, 비록 실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內閣에 있는 것이 아니고 宦奴(즉 宦官)에게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宰相制度를 회복시키고, 재상에게 職權을 주어 천자와 더불어可否를 의논할 수 있는 방안을 주장하였던 것이다.

(2) 學校 議政을 주장하였다

黃宗羲는 학교의 역할을 매우 중시하여, 학교는 인재를 배양하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시비를 공정하게 하는” 議政機關이 되어야 한다고 인식했다. 또한 “천하를 다스리는 인제는 모두 학교에서 나오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와 같은 시대의 계몽사상가는 역사상의 “清議”의 전통을 계승하여, 庶人 議政을 주장하였다. 顧炎武는 심지어 “清議”를 “王治”의 중요한 조성부분으로 간주하고, “천하의 풍속이 가장 많이 파괴된 곳이라 거기에 清議가 항상 존재하여 어느 정도는 유지할 수 있었으나, 清議가 없어짐에 이르러서는 국가의 혼란이 발생하는 것이다”라고 清議의 존재를 강조하였다. 黃宗羲는 東漢의 太學生이 국정을 논의한 것에서 근거를 찾아, 학교를 근대적인 의미를 지닌 議會機關으로 발전시켜, 是非를 결정하는 최고권력이 天子의 手 중에서 학교로 轉移되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천자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고, 천자가 그르다고 여기는 것이 반드시 그른 것은 아니다. 천자는 자신이 시비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학교에서 是非를 공정하게 해야한다”라고 명확히 제기하였다. 中央에서는, 天子로부터 公卿에 이르기까지 모두 太學의 祭酒의 面前에서 제자의 대열을 이루고, 祭酒가 정치의 득실을 비평하는 권한을 가지게 하자고 주장하였다. 地方에서는, 郡縣官이 모두 學官의 面前에서 제자의 대열을 이루고, 學官이 지방 政事의 잘못을 가려, 그 잘못됨이

“작으면 바로 잡고, 크면 복을 쳐서 군중에게 알려야 한다”고 하였다. 黃宗羲의 學校議政은 비록 議會政治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봉건전제제도에서 근대의회제를 향해 나아가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3) 地方分治를 제창하였다.

君權을 제한하기 위해서, 黃宗羲와 여타 계몽사상가는 중앙과 지방의 관계에서 고대 分封制와 郡縣制의 득실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양자가 각각 장단점을 지니고 있다는 비교적 일치된 의견을 보였다. 예를 들면, 封建制(分封制)에 있어서는, 지방의 권력이 지나치게 크고, 郡縣制에 있어서는, 지방의 권력은 지나치게 작다고 하였다. 黃宗羲는 “봉건제의 폐단은 강자가 약자를 겸병하여, 천자의 政敎가 펼쳐질 수 없는 바가 있다. 군현제의 폐단은 외부의 침입을 막아낼 힘이 부족하다”라고 하였다. 그는 봉건제와 군현제를 결합시켜, 지방의 독립성과 자립성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고염무의 견해도 기본적으로 황종희의 견해와 일치하였다. 그는 “봉건제의 의미를 군현제의 가운데에서 假託”하였다. 王夫之는 황종희·고염무에 비해 地方分治를 보다 강조하여, 군현제가 봉건제보다 우월하지 못하다고 여겼는데, 그 출발점은 군주집권적 정치체제를 바꾸려는 데에 있었다.

2. “一家之法”을 “天下之法”으로 대치시켰다.

명말청초의 계몽사상가는 봉건군주전제제도를 반대함과 동시에, 군주전제제도를 옹호하는 法制에 대해서도 반대하였다. “立法爲公(법률을 제정함에 있어서는 군주 개인의 욕심에 따라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제정하여야 한다)”와 도시시민의 이익을 골고루 돌보기를 요구했다. 이러한 사상에서 출발하여, 그들은 變法을 주장하고, 祖宗成法의 固守를 반대하였다. 黃宗羲는 “자손이 조상을 본받는 것을 孝”라고 주장하는 “俗儒(속된 유학자)”를 날카롭게 비판하였으며, 지금의 모든 제도는 모두 “멀리 생각하며 두루 살피고, 하나 하나 變通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顧炎武도 봉건통치가 이미 “법이 변하지 않아, 현재의 위기를 구할 수 없다”는 지경에 이르면, “舊章(즉 낡은 법률)에만 얽매일 수 없다”고 인식하였다.

王夫之는 그의 역사진화관에 근거하여 “조상을 본받고, 왕을 따르는(法祖從王) 것”, “옛날 것(故物)만을 고수하고, 새롭게 변혁(自新)할 수 없는” 보수적 사조를 비판하였으며, 세계에는 고정불변의 법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시기에 따라 법이 적절하게 변하지 않으면 “천하를 어지럽히게 된다”고 하였다. 역사적으로 보면, 법을 바꾸자고 주장하는 것은 모든 혁신가들이 택한 필연적인 태도였다. 變法을 긍정한다면 비로소 낡은 것을 제거하고 새로운 것을 건립할 수 있다. 黃宗羲로 대표되는 계몽사상가들은 바로 이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일련의 진보적이고 민주적인 요소를 지닌 새로운 법률관념을 제기한 것이었다. 그 중 시대적 특색이 가장 잘 드러나고, 후세에 가장 계몽적인 의의를 가지는 것이 바로 “一家之法(군주 개인을 위한 법)”을 반대하고, “天下之法(천하의 백성들을 위한 법)”을 주장한 것이다. “군주가 주인이고, 천하가 객이다”라는 점을 반대한 것과 “천하가 주인이고, 임금이 객이다”라는 것과 같이 서로 호응하는 관계에 있는 이러한 사상을 주장한 것은 그가 三代(夏·商·周)以前과 三代以後의 역사적인 사실을 비교하여 얻어낸 결론이었다. 이 논점의 주요한 것으로 두 가지가 있다.

(1) “三代以前에는 법은 있었으나, 三代以後에는 법이 없었다.”

黃宗羲는 “三代以前”의 “두 제왕(堯·舜)”, “三王(禹王·商의 湯王·周의 文王·武王)”은 “천하사람들을 부양하기 위해 밭을 주어 경작하게 하고, 천하의 사람들에게 옷을 입히도록 하기 위해 땅을 주어 누에를 치게 하였으며, 천하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 학교를 세웠으며, 혼인의 예로써 그 음일함을 막고, 군대의 賦로써 그 어지러움을 막았으니 이것이 三代以前의 법이다.” 三代以前의 법은 “천하를 위함”에서 출발한 것이며, “본디 한 사람을 위해 세운 것이 결코 아니다”는 것에서 알 수 있다. 그러나 “三代以後의 군주는 천하를 얻은 후에, 왕조의 수명이 길지 않은 것에 두려워하고, 자손이 왕위를 유지할 수 없는 것만을 오직 두려워하며, 환난을 미연에 고려한 것이 법이다. 이러한 법은 一家之法(군주만을 위한 법)이지, 天下之法(천하의 백성들을 위한)은 아닌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는 秦漢이래의 조치들을 나열하였는데, 예를 들면, 秦代에는 봉건제를 없애고 군현제를 실시하였으며, 漢代에서는 여러 아들을 봉하여 왕으로 삼는 등, 이러한 조치들은 모두 황제 한

사람의 私益을 위하여 만든 법이며, “조금도 천하를 위하는 마음”이 없는 이러한 법은 전혀 法이라 불리어질 수 없으므로, 그는 “三代以後에는 법이 없었다”라고 말한 것이다.

(2) “無法の 法”을 긍정하고 “非法의 法”을 부정하였다.

黃宗羲는 한걸음 나아가 “三代之 法”은 “天下를 天下에 숨긴 것처럼”, 천자는 “山澤의 利”·“상벌의 권한”을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여기지 않고, 천하의 사람과 함께 나누었으며, “귀한 자는 조정에 있지 아니하고, 천한 자는 民家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지적하였다. 그 결과, “법망은 더욱 느슨해졌으나, 환란은 더욱더적어졌으니” 이것이 바로 “無法の 法”이라고 할 수 있다. “후세의 법”은 “천하를 조그만 바구니(筐篋)에 감추고, 황제는 모든 福利를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여기고” 이로움을 백성들에게 나누어주려 하지 않고, 福은 반드시 황제 자신만이 누리려고 하여, 이를 위해 두려워하거나 의심하는 마음이 가득하였으며,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부당한 이익을 취할까 두려워했다. “사람을 기용할 때, 그 사람의 사사로운 것을 의심하여, 다른 한 사람을 기용하여 그 사사로움을 통제하였고, 一事를 행할 때, 속임수에 빠질 것을 염려하여 다른 一事를 만들어 그 속임수를 방지하였으니” “법을 이용하여 그 다스림에 더욱 치밀하게 되었다.” 그 결과 필연적으로 “법이 치밀해질수록 천하의 혼란은 법에서 생겨나게 되었던 것이다. 즉 “조그만 바구니에 천하를 숨긴 것처럼” 천하를 위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는 법이 되었으니 이것이 곧 “非法의 法”이라고 하였다.

“非法의 법”을 반대하기 위하여, 黃宗羲는 당시 非法의 法을 변호한 두가지의 관점을 비판하였다. 당시 非法의 法을 변호한 두 가지 관점 중 한가지는, “一代는 一代의 법이 있고, 자손은 法祖(조상을 본받는 것)를 孝로 삼는다는 관점이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의 王朝에는 한 王朝의 法制가 있으니, 明朝의 開國者가 法도를 창립하니, 자손이 마땅히 그 법도를 준수하여야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대해 황종희는 이러한 “非法의 法”은 “선대의 왕(前王)이 자신의 私利私慾을 채우기 위해 그러한 非法의 법을 만든 것”을 물론이고, 여전히 후대의 왕(後王)이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이러한 비법의 법을 없애는 것은 모두 같은 것이라며

고 하였다. 즉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비법의 법을 없애는 것은 본래 천하에 해로움이 될 수 있고,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비법의 법을 만드는 것 또한 처음부터 천하를 해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른 한가지의 관점은 “治人(백성을 다스리는 統治者)은 있어도, 治法(법으로 다스림)은 없다(有治人, 無治法)”라는 荀子의 말을 차용하여, 變法을 반대하고자 한 관점이다. 黃宗羲는 이러한 관점에 대해서도, 荀子의 “有治人, 無治法”이라는 것은 “법으로 다스리는 것(治法)이 정비된 후에, 백성을 잘 다스리는 군주(治人)가 필요하다(有治法, 後有治人)”라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천하 사람의 손발을 질곡하는 非法의 法·一家의 法을 바꾸지 않으면, 비록 백성을 잘 통치하는 유능한 사람이라도, 성과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만약 “천하의 백성들을 위하는 법(天下之法)이 있다면, 비록 유능한 통치자가 아닐지라도, 천하를 해롭게 하는 지경에는 이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黃宗羲가 “一家之法(一家만을 위한 法)”을 버리고, “天下之法(천하를 위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어두운 밤이 지속된 중국봉건사회에 있어서의 한줄기 빛이며, 近代사회로 지향하는 선구적인 사상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가 주장하는 이른바 “天下之法”이라는 것은 황제자신만이 이로운 것이 아니라, 천하의 백성들이 모두 “自私”, “自利”할 수 있고, “各得自私”, “各得自利”할 수 있는 법이었다. 이것이 바로 근대사회의 개인을 주체로 하는 관념이나 자유·평등을 외치는 부르조아계급의 법률관의 맹아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君主의 “立法爲私(사적인 이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법을 제정함. 즉 一家之法)”를 반대하고, “立法爲公(천하의 백성들을 위해 법을 제정함, 즉 天下之法)”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상은 다른 계몽사상가중에서도 이미 밝힌 바가 있었다. 예를 들면, 王夫之는 古代의 “왕은 하늘을 대신하여 상벌을 행하여야 한다(王者代天而行賞罰)”는 사상에 대해 해석하기를 “황제가 천하를 대신하여 상벌을 행한다는 것은 즉 명확하게 천하와 더불어 그 권력을 공평하게 하고, 다스림에 있어서 왜곡되지 않게 하도록 천하를 다스리는 방법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하였다. 그는 군주가 법을 제정함에 있어서는 마땅히 “大義를 천하에 밝히어, 그 법이 하늘의 도리와 같은 것처럼 받들어져” “천하에 하늘과 같은 지위를 공평히 하

여야 한다”라고 하였다. 顧炎武도 법률은 반드시 “천하에 공평하게 적용하고, 천하를 위해 존재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여겼다. 그들은 또한 黃宗羲처럼 법률의 역할을 매우 중시하였다. 王夫之는 과거의 잘못된 것을 교훈으로 삼아, 국가를 다스림에 있어서 법률을 매우 중요시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나라를 다스리는 길(治道)이 무너지는 것은 無法에서 비롯되었다”라고 그는 지적하였다. 왕부지는 특히 “천하가 망해가고 있을 때, 非法으로써 천하를 안정시킬 수는 없었다”라고 하였다. 顧炎武도 이르기를 “法制禁令”은 “왕이 폐기하지 않은 바이다”라고 하였다. 唐甄은 다른 일면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길, “나라에 법이 없으면 비록 많은 백성들을 거느리고 있더라도 통일이 되지 않아 그 군주는 저절로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군대에 법이 없으면 비록 용감하다고 하더라도, 군율이 세워지지 않아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였다. 바꾸어 말하면, 국가가 비록 크고 군사가 용맹하다고 하더라도, 모두 법이 있어야 하는데, 법이 없다면 반드시 싸움에서 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王夫之·顧炎武·唐甄은 法治와 人治의 관계에 대하여 黃宗羲와는 서로 다른 점이 있었다. 그들은 비록 법률의 작용을 중시하나 “법으로 다스리는 것은 있고(法治), 법을 잘 통치하는 군주(人治)는 없어도 된다”는 견해에는 의견을 달리 하였다. 즉 그들은 기본적으로 人(훌륭한 군주)·法(정비된 법)이 모두 필요하다고 여겼을 뿐만 아니라, 儒家의 “德을 위주로 하고 형벌을 보조로 하는(德主刑補)”사상으로 접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王夫之는 “하늘과 땅의 기운은 刑德(형벌과 덕)을 서로 부르고, 禍福을 서로 느끼며, 법은 그 운용여하에 따라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또한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으므로” 당연히 道德教養을 중시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 “항상 법으로 다스림에는 범조문에만 얽매이지 말고, 너그러운 德을 이용함으로 관대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좋은 법과 현명한 군주가 서로 결합하여야만 비로소 국가가 잘 다스려지는 이른바 “사람에게 맡기고 법에 맡기는 것(任人任法: 즉 人治와 法治) 모두를 治(다스림)라 한다”고 하였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사람에게만 맡기거나 혹은 단순히 법에만 맡기는 것으로는 모두 천하를 잘 다스리기에 부족하다고 하였다. 그가 볼 때, “법이 복잡해지면 갈수록 관리의 권리는 더욱 무거워져서, 점차 관리가 자기의 뜻대로 죄를 가볍게 하거나 무겁게 하므로, 뇌물이 공공연히 행해지게 되어, “죄인을 고의로

풀어 주거나” 혹은 “죄없는 사람들을 함부로 잡아들이거나, 마음대로 죄인의 죄를 더하거나 감하기도 한다”라고 하였다. 특히 “법을 제정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사람이 법을 어기는 데도 일정한 방향이 없으므로” 법률은 계속되는 범죄를 방지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법을 제정한 이후에 반드시 현명한 관리를 신중히 가려서 법을 집행해야 하지, 만약 “남의 화를 보고 즐거워하는” 小人에게 법을 집행하게 한다면, 국가가 크게 혼란해진다고 하였다. 顧炎武와 唐甄은 王夫之에 비해 사람에게 맡기거나(任人: 즉 人治) 가르침을 중시하는 데에 더욱 치우쳐 있었다. 顧炎武는 “人治를 폐기시키고, 法治를 사용하는 것”을 반대하고, 심지어 “법은 쓸모 없는 것(법의 無用論)”이라고 여기고, 단지 “민심을 바로잡고, 풍속을 후덕하게 하는 것”만이 비로소 혼란을 다스릴 수 있는 관건이며, 治國의 근본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名教”를 말하면서, 禮義와 廉恥를 士大夫가 반드시 지녀야 할 도덕 수양이라고 여겼다. 唐甄도 고염무와 비슷한 생각을 하였는데, 그는 儒家의 “德主刑輔(德이 주가 되고 刑이 보조가 되는 사상)”사상을 계승하여, “德을 말하지 않고, 형벌을 말하는(不言德而言刑)”것과 같은 것은, 예를 들면 의사가 병을 치료할 때 오로지 약으로만 치료한다면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하였다.

法制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계몽사상가들도 서로 같거나 비슷한 관점을 지니고 있었다.

첫째, 그들은 모두 법률을 통일하여, 군주가 법을 제정한 이후에는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王夫之와 顧炎武 모두 法外에 예가 있고, 예이외에 속이 있는 것을 반대하였고, “일률적으로 펼치는 법”을 요구하였다. 顧炎武는 “옛날의 환란은 예를 사용하여 법을 파기함에 있었고, 오늘날의 환란은 예에 따라 法을 제정하는데 있으니, 저절로 예가 행해지고, 法이 폐기되기에 이른 것이다”라고 하였다.

둘째, 그들은 법률이 위에는 엄하게 하고, 아래에는 관대하게 해야 한다(嚴上寬下)고 단호히 주장하였다. 王夫之는 “嚴(엄격하게 다스림)은 관리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經(남북으로 가로지르는 길)이라고 한다면, 寬(관대하게 다스림)은 백성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緯(동서로 가로지르는 길)이다”고 하였다. 만약 “단지 하급관리

들의 탐욕만을 엄격하게 다스리고, 상급관리들의 탐욕을 내버려둔다면, 法은 더욱 가혹해지고, 탐욕은 점점 심해지며, 정치는 더욱 문란해지고, 백성은 점점 더 궁핍하게 되어, 이에 나라는 망하게 된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문제에서 唐甄의 태도는 더욱 분명하였다. 그는 정치를 잘 하려는 자는 반드시 “형벌은 귀한 자를 먼저 처벌하고, 친한 자를 나중에 하며, 귀한 자를 무겁게 하고, 친한 자를 가볍게 하며, 귀한 자에게 엄밀하게 하며, 친한 자에게 너그럽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비록 법률이 간략해도 권위가 있게 되고, 형벌이 가벼워져도 사람들이 두려워서 따르게 될 것이다. 백성에 대하여, 그들은 모두 법조문을 간단히 하고, 형벌을 너그럽게 해야 한다고 했다. 王夫之는 先秦法家의 엄형준법(嚴刑峻法: 엄격한 형벌과 가혹한 법)을 반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儒家의 “관대하고 엄격함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寬猛相濟)”과 “엄격함으로써 관대함을 보충하는 것(以猛濟寬)”도 반대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형을 가볍게 할 것을 주창하고 형벌을 엄격하게 하는 것을 반대하였다. 王夫之가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한 바를 말하면, “법은 간략하더라도 능히 범죄를 막을 수 있고 형벌이 비록 가볍더라도 반드시 행해진다”고 하였다. 唐甄도 “형벌을 줄이고 杖刑을 가벼이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가 知縣으로 재직 중에는 비록 사형수라 하더라도 杖刑을 가하지는 않았다. 상술한 계몽사상가의 嚴上寬下(위에는 엄하게 다스리고, 아래에는 관대하게 다스리는) 사상은 貴賤의 평등을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의 민주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세제, 그들은 法制를 중시하는 동시에, 또 淸議를 견지하였다. 淸議는 明末 東林黨인들이 市政을 평론하고 閹黨을 반대하는 중요한 무기였다. 明末淸初의 계몽사상가는 대부분 東林黨의 유풍을 계승한 復社의 성원이었다. 그러므로, 淸議는 모두 역사적인 전통이 있으며, 계몽사상가들이 정부를 감독하거나, 관리들에게 제약을 가하는 등 正義를 구현하는 유력한 수단이었다. 黃宗羲는 바로 淸議에서 출발하여, 學校議政(학교에서 政治를 의논함)으로까지 발전하였던 것이다. 顧炎武도 황종희와 같이, “淸議는 鄉里에서 존재하며, 형벌의 잘못됨을 보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관원의 승진과 강등도 鄉評(향리에서 평론)에서 좌우할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그들이 淸議를 政治와 法制와 함께 관련하여 논한 사상도 어느정

도 근대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重農抑商을 반대하고, 工商皆本(상공업이 모두 근본)임을 주장하였다.

明末清初의 계몽사상가의 사상은 자본주의 맹아라는 시대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상공업이 모두 근본(工商皆本)이라는 그들의 주장에 뚜렷이 구현되었다.

“重農抑商” 혹은 “崇本抑末”은 중국 고대의 뿌리깊은 전통사상이다. 先秦의 儒家·法家 兩家は 여러 방면에서 대립되나, 농업을 근본으로 삼고, 상업(수공업 포함)을 末로 삼으며, 아울러 장기간에 걸쳐 봉건통치자가 정책이나 법률을 제정하는 데 지도적인 사상이 되었다는 것에는 다같이 찬성하였다. 이것은 비록 봉건자연경제를 유지하는 데는 유리하였으나, 상품경제의 발전에는 불리하였다.

黃宗羲는 중국역사상 農業을 本으로 삼고, 商工業을 末로 삼는 전통적인(崇本抑末)思想을 工商皆本(상공업이 모두 本業)으로 인식한 사상가였다. 그는 “지금 무릇 대도시의 상점은 열집에 아홉집이 불교와 관련된 물건들이나 巫俗과 관련된 물건을 팔고 있는데 이러한 물건은 모두 民間의 쓰임에 절실한 물건은 아니다. 이러한 정황을 통절히 여기는 것 또한 폐단을 구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것이 바로 聖王이 말한 崇本抑末의 길인 것이다. 속된 유학자가 商工業을 末로 삼고 함부로 상공업을 억압한 것이다. 무릇 工業은 본래 聖王이 하고자 한 바였고, 商業 또한 성왕이 하고자 한 바였으니, 상업·공업이 모두 本인 것이다”라고 하였다.

본래, 先秦儒家와 法家の 重農抑商의 思想에서는, 주로 “奇技淫巧”를 반대하였지만, 민간에 절실한 수공업을 억제하지는 주장을 펼치지 않았다. 다만, 그들의 抑商思想과 抑商政策은 상품유통경제에 불리하게 작용하였으며 따라서 수공업의 발전에도 불리하게 작용하였다. 특히 秦漢이후, 봉건국가는 백성과 더불어 利權을 다투며, 民間의 商工業발전에 각종의 제한을 가하였으며, 사상적으로도 멸시를 함으로써 상공업자의 손발을 더욱더 속박하였던 것이다. 黃宗羲가 工商皆本(상공업이 모두 근본)이라는 사상을 제기하기 이전에, 商工業은 언제나 末業에 위치하였고, 농업과 동등한 지위를 얻지는 못했다. 다른 한편으로, 봉건통치자는 부패하고 향락적인 생활을 만족시키기 위해, 오히려 국가경제와 국민경제에 해로운 상공업에 제약을 가하지 않고, 民間에 유용한 상공업에만 제약을 가하였다. 그러므로 먼저

民間에 절실한 것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를 명확히 살펴본 후에, 비로소 민간에 절실한 상공업을 본의 위치로 해야 한다는 황중희의 주장은 매우 시사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민간에 절실한 것인지를 살펴지 않고 상공업을 억제하는 것을 반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간에 절실한 것인지를 살펴지 않고 상공업을 무조건 숭상하는 것도 반대하였다. 바꾸어 말하면, 그는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유익한 입장에 서서, 工商皆本(상공업이 모두 근본)을 주장하였던 것이다.

황중희와 같이 자본주의 맹아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는 계몽사상가들은 특히 重義輕利(義를 중시여기고 이익을 경시함)思想을 지닌 전통적인 中國版 계몽사상가라고 할 수 있다. 마치 레닌이 “우리들은 결국 어떠한 유산도 거절한다”라는 글에서 “그들은 당시에 어떠한 이기성도 결코 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黃宗羲의 이러한 기품은 工商皆本(상공업 모두 근본)이라는 데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그가 결코 抑農(농업을 억압)을 주장하지 않은 것에서도 나타났다. 그는 “重商抑農”의 구호를 제기하지도 않았고, 자본의 원시적축적을 생각하지도 않았으며, 장차 도래할 사회적인 모순도 알 수가 없었던 것이다. 황중희가 주장하는 工商皆本은 실질적으로는 바로 農工商 皆本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농업을 本業으로 볼 때에도, 우선 농민의 생계 문제를 고려하고, 상당수의 빈곤한 농민이 농사지을 땅도 없는 비참한 정황을 동정하였던 것이다. 黃宗羲와 顧炎武 등은 皇室·貴族·閥官·권력자 등등에 의해 전국의 토지가 겸병되거나 가혹한 세금을 거두는 등 농민들의 생활을 꺾박하는 이러한 행위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었으며, 이러한 정황이 亡國의 징조라고 하였다. 그는 井田制를 바탕으로 하는 토지소유개혁을 주장하였다. 즉 “田土均之(토지를 균등하게 분배)”를 원칙으로 하는 토지유제 개혁의 형식으로 토지개혁을 진행하여, 농민에게 授田하고 국가는 단지 十一稅만 거두어 들여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옛날의 聖君은 마야흐로 授田(토지를 분배)하여 백성을 부양하였으나, 오늘날은 백성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마저도 법으로 빼앗고 있다. 授田의 정책은 이루어지지 않고 奪田(토지를 빼앗음)의 정책만 이루어 지고 있다. 이른바 행함에 있어 하나라도 義로운 것이 아니면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황중희는 “先王은 정전제를 실시하였으므로, 백성들의 생활

이 안정되었다”라고 하면서 井田制를 반드시 회복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정전제를 바탕으로 백성들에게 토지를 분배하여야 한다는 黃宗羲의 사상은 다소 환상적이며 비현실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었지만, 백성들을 부유하게 하려는 민주적인 요소와 大同理想적인 사상을 지니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黃宗羲의 工商皆本(상공업은 모두 근본)이라는 사상에서 수반되는 문제가 貨幣改革의 문제가 있다. 상품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그는 봉건왕권이 독점하는 金銀貨幣를 폐지하고, 銅錢을 통일하여 쓰고, 아울러 紙幣를 통일적으로 발행하여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농민의 토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에 있어서, “천하를 한 사람이 사사로이 할 수 없다”고 주장한 王夫之는 理想적인 사상이 풍부한 黃宗羲보다 상당히 현실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王夫之는 古代와 당시의 현실을 비교하였다. 즉 한편으로는 秦漢以後의 專制皇權을 비판하였는데, “古代的 봉건적인 天下에서는 天子만이 부유하지도 않았고, 農民만이 빈곤하지도 않았다. 秦代에 들어와서, 봉건제가 폐지되자, 富貴는 황제 한사람에게만 점유되었다”고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세도가의 토지점병과 가혹한 부세 등에 대한 폐단을 지적하면서 “三代(夏·商·周)이래의 弊政을 보면, 권세가들의 토지점병에 대한 폐단을 들 수 있다. 백성들에게 경작시켜, 국가는 十一稅를 취하며, 권세가는 수확의 50%를 취하므로 농민은 곤궁한 지경에 이른다”고 하였다. 그러나 국가는 “세금을 거두는 데에 일정함이 없고, 탐관오리들의 부패는 그침이 없었으니,”이로 말미암아 농민들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禍가 되니 농민들은 자신의 토지를 세도가에게 바칠 수 밖에 없었다. 그 결과 “토지는 세도가에게 점병되는 추세가 그치지 않았으니, 천하의 혼란 또한 극한 상황으로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리라!”라고 하였다. 王夫之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는 세금을 가버이 하고, 관리들의 부정을 금지하여 농민의 생활을 안정되게 하여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민이 고통받는 바가 없으면, 곧 점병하는 세도가도 함부로 욕심을 내는 일이 없게 되고, 백성들은 토지를 소유하는 자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토지는 자연히 균등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明末清初의 黃宗羲를 대표로 하는 계몽사상가들은 당시에 있어서 근대적인 사상적 요소를 지니고 있었지만, 그들의 사상이 실천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매우 제한

적이었다. 16세기부터 세계상업과 세계시장은 자본을 바탕으로 하는 근대적인 시기로 접어들고 있었으며, 明代 중후기의 정황으로 볼 때 중국도 동일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중국근대사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특히 후에 외국자본주의의 침입으로 오랜 기간동안 어려운 길로 들어갔다고 할 수 있으며, 실령 외국자본주의의 침입이 없었더라도 중국은 서서히 자본주의 사회로 발전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黃宗羲 등을 대표로 하는 계몽사상가들의 노력이 완전히 수포로 돌아간 것은 아니었다. 法律思想史에서 보면, 顧炎武는 黃宗羲의 『明夷待訪錄』을 읽고 “이 책을 두세 번 읽으니, 천하에 일찍이 인재가 없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으며, 모든 군주들의 폐단을 고칠 수 있고, 三代와 같은 태평성세로 돌아갈 수 있다”고 했다. 또 200여년 지난 清末에 이르러서는, 民權共和를 부르짖는 부르조아 改良派로 하여금 구시대의 思想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었으며, 양계초 등은 수만권의 책을 인쇄하여 비밀리 배포하고 민주주의를 선전하는 도구로 이용하였던 것이다.

임대희* · 박구철** 번역

*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교수

** 京都大學 博士課程 在學中

교정과정에서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에 재학중인 우성숙씨의 도움을 받았다.